

「구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지역사회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자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일자리 창출 정의 구체화(안 제2조제1호)
-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사업(안 제5조, 신설)
-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내용의 범위 변경(안 제6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고용정책 기본법」
 -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
 -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」
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
-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.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일자리 창출의 정의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고 행정적·재정적 지원 범위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일자리 창출 촉진 및 활성화 지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, 지원 대상을 당초 비영리 법인·단체에서 기업, 개인까지 확대하여 지역사회의 고용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